

kiri Weekly

2012.12.17 제212호

이슈

주요국의 지급결재수단규제분석과 시사점

포커스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14: 특종보험의 개념 및 종류

국내금융 뉴스

FY2012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11월 실업률, 4년 만에 최저치 기록
유럽 _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 합의
일본 _ 도쿄·오사카 증권거래소 합병 승인
중국 _ 주요 외자계 보험회사, 향후 3년간 고성장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규제 분석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이 보험회사들과 병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높은 온라인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이 사회적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 악화를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됨.
 -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한 평균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신용카드대출 억제 정책 등으로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신용카드회사의 부담을 가맹점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공정성(equity)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주요국들의 지급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소송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급결제수단의 균형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감독당국과 보험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학계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문제점과 호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제도개선 및 소송관련 사례를 분석
-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의 원칙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회사에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해 줄 것을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수수료 인상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
 - 신용카드사들은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20%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음.¹⁾
 - 특히 자동차보험료 등 손해보험 상품들의 7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함.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상품 비중이 80~90%에 이르는 온라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경영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도 있음.²⁾
- 특히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높은 수준임.
 - 국회는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편의 방향 중 첫 번째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책정"으로 선정하였음.³⁾
 - 또한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수에 포함될 정도로 공공성이 큰 지출항목이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 수준이나 호주는 0.33%, 영국0.9%, 미국 1.43~1.89% 수준임.
- 신용카드회사들과 손해보험회사 간의 수수료 논란은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이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Equity)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임.

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신용카드사들은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2012. 12. 5); 세계일보(2012. 12. 3).

2)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손해보험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약사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전체 원수보험료 5,654억 원 중 86.8%인 4,910억 원을 신용카드로 수납했는데 수수료 평균 인상률인 0.4%포인트 인상을 적용할 경우 19억 6,000만 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29억 원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아시아경제(2012. 11. 26), 『카드 수수료 인상, 온라인 보험사에 직격탄』.

3) 이외에도 가맹점 수수료 산정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선정,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적용 의무화,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였음.

-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편익보다 비용을 더 인상시키고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
 - 지급결제수단의 효율성이란 효율적인 수수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지급결제 수단별 거래횟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경영수지 악화,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신용카드 사용자들 이외의 경제주체들(보험가입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감소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와 소송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금융학회, 신용카드학회에서 논의된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들의 신용카드 규제와 소송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향과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보험산업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함.

2. 카드산업의 문제점



- 학계에서 제기되어온 카드 산업의 문제점은 크게 비경쟁적 가맹점 수수료율과 지급결제 수단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equity)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가. 비경쟁적 가맹점 수수료율과 지급결제 수단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 최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가맹점 수수료가 경쟁적 균형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임.
- 가맹점 수수료가 경쟁적 균형 수준이라면 수수료는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사, 가맹점, 개인회원들의 편익과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납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만큼 매출이 증가할 경우, 카드회원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지급 비용만큼의 편익(현금소지 불필요, 지급결제의 안전성, 신용 축적으로 인한 보상 등)을 얻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반면 경쟁적 균형 수준에서 이탈해 있다면,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거나 (효율성 저하) 특정 경제주체의 편익 감소가 다른 경제주체의 편익 증가(공정성 훼손)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다는 것은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한 거래에서 가맹점, 고객 등이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자신의 편익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은행(2011)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2.08유로로 현금이나 직불카드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사간 경쟁 심화로 휴면카드가 양산되는 등 과도한 카드발급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쟁으로 경제활동 1인당 보유 카드 수는 1990년 0.6매에서 2011년 4.8매로 증가하였고 신용카드회사들의 영업·마케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표 1〉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단위: 거래 건당, 유로)

구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평균
현금	0.30	0.53	0.50	0.99	1.85	0.60	0.25	0.72
직불카드	0.49	0.55	0.34	0.52	0.23	1.30	0.19	0.52
신용카드	3.59	2.62	0.48	2.61	2.44	2.00	0.82	2.08
기타1)	0.93	0.54	-	0.56	0.28	7.00	-	-

주: 1) 네덜란드·벨기에는 선불카드, 노르웨이는 지로, 포르투갈은 입금이체, 호주는 수표.
 자료: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한국은행(2011).

나. 효율성 측면

〈지급결제 수단의 불균형〉

■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은 지급결제 수단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결제 수단의 불균형이란 특정 지급결제 수단이 과도 혹은 과소 사용되는 현상을 의미⁴⁾

- 특정 지급결제수단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은 역으로 지급결제수단의 수수료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직불형카드1)	9.0	42.3	74.4	92.7
신용카드	91.0	57.7	25.6	7.3

주: 1)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2011).

- 국내 지급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정책, 네트워크 효과⁵⁾라는 시장특성에 기인한 카드회사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사용 등임.

- 정부는 소비 진작과 거래의 투명성 확대,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가맹점의 가격 차별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해왔음.
-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회원 확보를 위해 부가서비스 확대, 모집경쟁 등 고비용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음.
- 카드회원들은 카드회사의 부가서비스 혜택,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중을 확대해 왔음.
 - 국내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은 12.3%(2011년 기준)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 49%(2011), 독일 73.9%(2010), 영국 67%(2010)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불완전 경쟁〉

- 카드산업의 불완전 경쟁이 비효율적인 과도한 수수료의 원인일 수 있는데, 특히 카드발급사간의 경쟁보다는 카드발급사와 가맹점 간의 불완전 경쟁이 과도한 수수료의 원인일 수 있음.
 - 카드산업의 경쟁은 Visa, Master Card 등 카드 네트워크 혹은 발급회사간의 경쟁과 카드 발급사와 가맹점 간의 경쟁 등 네트워크 내에서의 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카드발급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가맹점과의 수수료 책정에서 협상력이 높은 경향

4)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존재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지난 10년간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5)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란 카드회원이 많을수록 가맹점은 매출이 증가하고 카드수납 가맹점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카드보유를 유인하여 사회 전체적인 카드결제수단의 가치(value of payment)가 제고되는 효과를 말함.

- 미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Visa나 MasterCard의 수수료 책정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은 American Express, Discover의 협상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존재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지난 10년간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완전경쟁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됨.⁶⁾

■ 카드발급사와 가맹점 간의 불완전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는 카드회사들과 가맹점들 간의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 사례인데, 가맹점 수수료가 비효율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는 미국 카드업계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음.⁷⁾

- 2005년 미국의 대형 소매점 체인 등이 신용 및 직불카드 이용 시 카드업계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높다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제과점 등 소규모 업체 700만 개가 동참하였음.
 - Visa나 MasterCard와 같은 카드협회와 일부 대형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정산수수를 평균 2% 정도로 담합(price-fixing)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형 소매업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가격담합 문제 외에도 카드협회가 가맹점에게 금지하고 있는 가맹점의 가격차별 금지 등과 같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 카드회사들은 가맹점이 고객들이 제시하는 결제수단(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에 따라 가격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였으며, 가맹점에 72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⁸⁾

다. 공평성(Equity) 측면

■ 카드 수수료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편익과 비용을 재분배 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카드회원들의 부가서비스 혜택(낮은 거래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가맹점의 편익이 카드회원들의 편익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음.
-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인상이 가맹점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카드수수료 인상은 상품 수요자의 편익 감소로 이어짐.

6)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November 2009).

7)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발급회사들에 대한 규제는 업권별 감독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이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경쟁, 불공정거래 등을 감독하고 있음. 가맹점과 소비자 단체의 카드협회, 카드발급회사들에 대한 소송이 많았음.

8) 배상금 60억 달러와 향후 8개월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매출감소가 포함되었음. 이외에도 2003년에는 월마트 등 미국 내 500만 개 가맹점들이 Visa와 Master Card가 공모하여 수수료가 높은 서명식 직불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적 위법행위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Visa와 Mastercard는 가맹점에게 향후 10년간 30억 달러를 지급하고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 가맹점들이 지급결제수단을 차별화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짐.
 - 가맹점들이 고객들이 제시하는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차별화하거나 고객들의 지급결제 수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급결제수단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3. 주요국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



- 주요국들은 지급결제 수단의 수수료 수준(level) 및 체계(structure)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급결제 수단의 비효율성과 공평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⁹⁾
 - 호주, 뉴질랜드,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를 통해 지급결제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카드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가.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가맹점들이 소비자들의 지급결제수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부과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호주는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이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호주에서는 2009년 현재 대형가맹점의 26%, 초대형 가맹점의 34%가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가맹점의 22%가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9) 약 30여 개 국가에서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거나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Terri Bradford and Hayashi, "Developments in Interchange Fees in the US and abroad".

- 영국, 스웨덴에서도 가맹점이 수수료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허용¹⁰⁾
- 네덜란드에서는 특정 금액(10유로) 이하를 구매하는 고객이 직불카드(Debit Card)로 결제하려고 할 경우 추가 수수료(구매 금액의 2.3%) 부과를 허용하고 있음.¹¹⁾
- 미국에서는 Cash Discount Act를 통해 현금 결제 시 구매 가격 할인을 허용해 왔으며 전술한 집단소송 이후 가맹점의 가격차별이 확대되었음.
 - 이외에도 미국 중소기업의 13%는 신용카드결제 최소 구매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¹²⁾

나. 카드수수료 규제 및 경쟁촉진

■ 감독당국이 카드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음.

- 가맹점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호주, EU 등에서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금융개혁법(Wall Street Reform Act 2010) 개정으로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규제하고 있음.
- 호주는 2003년 11월부터 결제시스템 운영비용에 근거해서 정산수수료를 결정하도록 규제
 - 호주의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카드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은 Visa와 Master Card의 가중평균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임.
 - 2003년 시행 이후 2007. 3월에서 2008. 2월 간 수수료 감소규모는 11억 호주 달러 규모로 추산
- EU는 유럽지역 국가들의 국경 간 카드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Master Card와 최근 합의
- 미국의 금융개혁법(Wall Street Reform Act 2010)은 카드회사들의 경쟁제한적인 직불카드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설정방식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¹³⁾
 - 연방준비위원회는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 정산수수료가 카드발급기관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히(reasonable and proportional)” 설정되도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¹⁴⁾

1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6).

11) Wilk Bolt, Nicole Jonker, and Corry van Renselaar(2008. 12), "Incentives at the Counter: An Empirical Analysis of Surcharging Card Payments and Payment Behavior in Netherlands".

12) NFIB Research Foundation(2008), "Credit Cards", National Small Business Poll 8, No. 3.

13) 김규수(2010. 9), 『미국의 카드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여신금융협회.

14) 미국의 카드산업은 4당사자 체제로 카드회원에 대한 카드발급기관(issuer)과 가맹점의 카드전표를 매입하는 인수자(acquirer)가 존재하는데, Visa나 Master Card같은 네트워크는 카드발급기관과 인수자 간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라고 함.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기관과 인수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3당사자 체제임.

- 카드발급기관이 하나의 직불카드 네트워크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운영기관의 제한 규정을 금지하고 직불카드 발급은행이 여러 직불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간 경쟁촉진을 통해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¹⁵⁾

■ 카드산업에 대한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지급결제 수단 선택을 유도하여 카드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를 시행

- 호주는 2004년 4월부터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일반법인에게도 신용카드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가맹점도 발행전표를 매입하는 매입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미국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공시 강화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신용카드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지급결제 수단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 공시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협회·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Visa나 Master Card 등은 1년에 2회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시

4. 시사점



■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지급결제수단관련 규제는 경제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
- 둘째,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 공시 의무화
- 셋째, Visa나 Master Card 등의 가맹점에 대한 가격차별 금지(No Surcharge Rule)의무 완화
- 넷째, 카드발급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협의 허용

15) 길재욱·박영석·신진영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에 따르면 1~2%인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인하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정도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카드 네트워크 간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카드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여 지급결제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맹점의 가격차별 허용과 소비자들에 대한 공시 강화로 합리적인 지급결제 수단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음.
 -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카드의 수수료·금융비용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카드회사들의 경쟁을 간접적으로 제고

- 규제의 효과를 호주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호주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개혁¹⁶⁾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지급결제 비용이 저렴한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이 늘어났음.
 - 신용카드 이용금액 가중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2003년 1.63%에서 2010년 1.10%로 낮아졌음.¹⁷⁾
 -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사에 전가되었는데¹⁸⁾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직불카드 등 신용카드보다 비용이 저렴한 지급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직불카드 수수료 체계가 개정된 2006년 이후 직불카드의 이용건수가 신용카드 이용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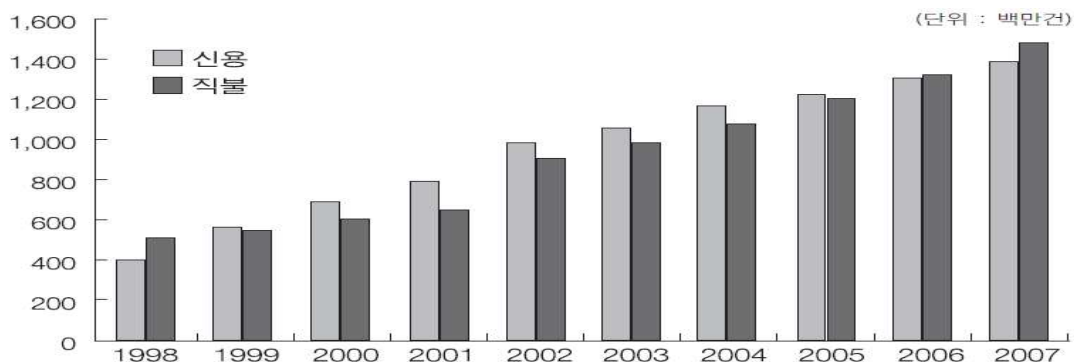
- 호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 산업 내에서는 가맹점, 카드회원, 카드회사 간의 재분배를 통해 카드회원들과 카드사의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직불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급결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보임.

16)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는 2003년 11월 거래금액 기준 0.95%에서 0.55%로 낮아졌으나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는 거래건당 기준 약 0.40 호주 달러(거래금액 기준 0.95%)로 유지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2006년 11월에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를 거래건당 기준 0.12 호주 달러로, 신용카드의 정산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0%로 인하하였음.

17) 함정식(2012, 3), 『호주 신용 및 직불카드 체계 개혁과 영향』, 여신금융협회.

18) 호주 중앙은행 통계 및 Dean Sewell의 The New York Times 기고 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개혁 전(2003년)과 개혁 후(2010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혜택변화는 가맹점 82 호주 달러 증가, 회원 68 호주 달러 감소, 신용카드 회사 14 호주 달러 감소로 나타났음.

〈그림 1〉 호주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건수 추이



주: 1)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포함.

자료: 김태진(2010, 9), 『호주 중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점』, RBA, 신용카드 46호, p. 57, 재인용.

■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경쟁을 통해 사회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서도 전화·인터넷 등 직접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지급결제수단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지급결제수단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소액지급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논쟁은 지급결제수단의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소액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은행권의 반대로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
 - 은행권의 반대 논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것임.
- 지급결제 관련 보험회사의 비용이 절감되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보험의 순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